




CONTENTS

목 차

1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요
2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방향

제 1장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요



 1. 개 요


1.1 배경 및 목적

❖ 목 표

-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방지 등 토양의 적절한 관리·보전
-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

❖ 연 혁

- 1995년 제정
- 2차례의 개정 (1999년, 2001년)
- 3차개정 진행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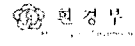
 환경부
Ministry of Environment



1. 개 요

1.2 토양환경보전법의 구성체계

총 칙	토양오염 규제	대책지역 지정관리	토양관련 전문기관	보 칙 칙
- 목 적	- 특정토양오염유발 시설 신고	- 대책기준	- 지정 등	- 대집행
- 용어 정의	- 토양오염검사	- 대책지역의 지정	- 결격사유	- 관계기관협조
- 토양보전기본 계획의 수립	- 유발시설 설치차에 대한 명령	- 대책계획의 수립시행	- 지정취소 등	- 국고보조
- 토양오염우려 기준	- 토양오염 방지조 토양오염의 정화 및 책임	- 토양오염개선사업	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전문업	- 보고 및 검사
- 측정망 설치 계획의 고시	- 오염토양의 정화	- 토지이용제한	- 토양정화업의 등록	- 권한위임
- 토지등 수용	- 투기금지	- 행위제한	- 등록취소 등	- 벌칙
- 타인토지출입	- 위해성 평가	- 대책지역 해제		- 양벌규정
- 손실보상	- 토양정화의 검증	- 오염피해 무과실책임		- 과태료
- 토양오염공정 시험방법	- 자발적 협약			
- 토양환경평가				



1.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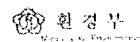
1.3. 토양관리의 특성

[수질·대기와의 차이]

- 수질·대기환경보전법 : 규제법적 성격
- 토 양 환 경 보 전 법 : 책임법적 성격

[토양관리의 기본 틀]

- 조 사
 - 국 가
 - 토 양 측 정 망 : 지방환경청
 - 토양실태조사 : 시, 도 (시,군,구)
 - 민 간
 - 토양오염도검사
 - 토양환경평가
- 정 화 : 오염원인자 원칙(유발, 소유, 점유, 운영자)






제2장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방향

2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의 주요내용

- 토양조사 분야**
 - 오염토양 발견 신고제
(토양측정망, 토양실태조사, 토양오염도검사, 토양환경평가)
- 토양정화 분야**
 - 토양정화업 등록, 토양검증제도 도입
 - 오염토양 무단투기 금지
 - 오염토양 반출신고제
 -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근거규정 신설
- 기 타**
 - 자발적 협약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
 - 토양관련 전문기관 기술요원 교육

환경부
Ministry of Environm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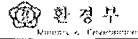



2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2.1 입법예고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□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정화검증제도 도입
(안 제23조의5 및 제15조의6)

- 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인력과 토양정화 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등록제 시행
(토양환경기술사, 토양환경기사 자격신설 : 국가자격기술법)
- 정화검증기관이 정화검증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화에 대한 신뢰성 확보





2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2.2 입법예고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□ 토양오염발견 신고제 도입

- 오염토양 발견시 유발자 또는 발견자가 신고하도록 함
- 이후 절차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절차와 동일
- 다만, 현실적 문제 (중금속 오염토양에 대한 인지문제, 불특정다수의 발견시 처벌문제...)로 인하여 벌칙규정 없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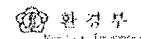


2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2.3 입법예고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□ 오염토양 무단투기금지에 대한 규정 신설

- 오염토양을 무단투기한 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- 오염토양의 보관·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누출·유출시키는 행위 (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)
-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(희석행위)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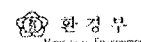


2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2.4 입법예고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□ 오염토양 반출신고 신설

- 오염토양을 부지밖에서 정화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장의 검토를 받도록 함
 - 특별대책지역, 하천변 등에서의 정화를 금하고, 누출·유출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
- 반출신고 없이 반출할 경우, 미신고가 아닌 무단투기로 간주 (2년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신고는 하였으나, 검토받지 않고 반출한 경우 1년이하 징역, 5백만원 이하의 벌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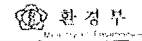


2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2.5 입법예고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□ 토양오염위해성평가 근거규정 신설

- 토양정화에 앞서 필요한 경우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, 이를 토대로 토양정화를 하도록 하는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근거규정을 신설
-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한 경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
- 향후 위해성평가의 신뢰성 향상 및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범위 확대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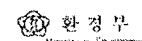


2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2.6 입법예고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□ 자발적 협약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

- 환경부장관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간에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, 협약을 체결한 시설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
- 현재 SK, LG, 현대, S-oil, 인천정유 등 5대정유사와 협약체결
- 토양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타 기관과도 협약체결 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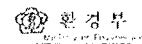


2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2.7 입법예고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□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요원 등의 교육

- 2003년 토양관련전문기관 점검 결과,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미 준수 등으로 인하여 경고조치 사례발생
- 토양정화업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요원은 정기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
- 교육비용은 기술요원을 고용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함
-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
2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2.8 입법예고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

□ 토양정화업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무

- 명의대여 금지(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)
- 토양관련전문기관, 정화검증대상 미만으로 정밀조사의 고의 축소 금지(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)
- 업무의 전량 하도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
- 정화검증 또는 완료검사 등의 부실검사(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)
- 2년동안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(지정) 취소

